

의안번호	제126호
의결연월일	2020. 10. 21.

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13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20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일부가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개정 내용(재난관리기금 용도 제외사항) 반영(안 제3조)
-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의 관리와 운용 등 추가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